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5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 박성훈·김성원·이달희

이헌승 · 김종양 · 이인선

고동진 • 한지아 • 박충권

임이자 · 김도읍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·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(이하 '생산·가공시설등'이라 함)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·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,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

그런데 최근 해수부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시설에서 생산한 '굴'을 구매하여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사실을 적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(FDA)측에 해당 업체명의로 불법 수출된 굴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함.

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수산물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행보

다 가중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등록된 생산·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·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,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·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74조제1항제1호 신설 등).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생산·가공시설등을 등록할 수 없다.

- 1.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산·가공시설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2.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119조제6호·제7호· 제8호 또는 제120조제9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1호"를 "제1호 또는 제8호" 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·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·수산가공식품을 등록된 생산·가공시설등에서 생산· 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산·가공시설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)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9조제6호·제7호·제8호 또는 제1 20조제9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4조(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제74조(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) ①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등) ① -----수산물의 생산 · 가공시설과 제 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 하는 시설(이하 "생산·가공시 설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 · 가공시설등을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 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. <단서 신설> 해당하는 자는 생산 · 가공시설 등을 등록할 수 없다. <신 설> 1.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 산 · 가공시설등의 등록이 취 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.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 <신 설> 령을 위반하여 제119조제6호 ·제7호·제8호 또는 제120조 제9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 이 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~ ⑤ (생 략)

제78조(생산·가공의 중지 등) ① 지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·가공 시설등이나 생산·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생산·가공·출하·운반의 시정·제한·중지 명령,생산·가공시설등의 개선·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.

1. ~ 7. (생 략) <신 설>

② (생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에78조(생산·가공의 중지 등) ①
제1호 또는 제8호
<u> </u>
-
•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·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·수산가공 식품을 등록된 생산·가공시설등에서 생산·가공시설등에서 생산·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또는 수출한 경우
- ② (현행과 같음)